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4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 민형배・이개호・양문석

이강일 • 이정문 • 이용선

김태선 • 이수진 • 박지원

김용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. 금고 이상 형 확정,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,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. 다만,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 니다.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 이 많습니다.

이에,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.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).

법률 제 호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 외하고는 이"를 "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	제7조(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	②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	<u>o]</u>
<u>우를 제외하고는 이</u> 법에 따른	
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	
지 아니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